

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

제정 2017. 5. 4 조례 제164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갈등”이란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공공정책(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,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·추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.
- “갈등관리”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·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“갈등영향분석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·분석하고,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의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)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

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익의 비교·형량)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·형량(衡量)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갈등영향분석)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·시행·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서(이하 “갈등영향분석서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
 2.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
 3.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
 4. 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
 5.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
 6. 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
 7. 그 밖에 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갈등 예방·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

2. 제4조제2항에 따른 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
3.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정비
4.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
5. 제17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·운영
6. 그 밖에 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2. 갈등관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

3. 변호사, 건축사, 세무사, 노무사,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

4. 그 밖에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갈등 예방 및 조정·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⑤ 간사는 갈등 예방 및 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현장민원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촉 해제)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

2. 질병, 사망,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2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·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, 심의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② 심의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·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심의 결과의 반영)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(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)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 ·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 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공정책의 수립 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

고려하여야 한다.

제16조(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)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7조(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
② 협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, 당사자 및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③ 협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는 4개월 이내의 활동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합의하여 4개월의 범위에서 1회만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8조(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)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,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또는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갈등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협의회 참여 및 자문
2. 갈등의 예방·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의 작성·활용
3. 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한 교육훈련

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

4.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·연구

5.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·연구

6. 그 밖에 갈등의 예방·해결에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(비밀유지) 위원회 위원, 협의회 위원 및 제19조제1항의 갈등관리전문기관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(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)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22조(갈등관리실태의 평가)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·평가할 수 있다.
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